

제 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4.12.)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총무위원회

목 차

| | | |
|---|------------------------------------|----|
| 1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
| 2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
| 3 |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
| 4 |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5 |
| 5 |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
| 6 |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
| 7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
| 8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4. 6.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3. 26.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3. 3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 가. 제안이유
 -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 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범위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위임조례 형식에 맞게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2)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전 조문)
(현행) 예산편성 과정 ⇒ (변경)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안 제5조)
- 4) 조례로 위임된 주민의견수렴 방법을 정함(안 제6조)
 - 가) 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나)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 5) 법령 위임범위 및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대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구성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신설 (안 제8조~제18조)
 - 가) 위원 수 확대 : 15명 ⇒ 30명
 - 나) 위촉 위원 연임
 - 다) 위촉 위원 공개모집 절차 구체화
 - 라)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마)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신설(안 제18조)
 - (1)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기능대행
 - (2)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거창읍은 한시적으로 지역회의 구성
 - (3)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등 의결
- 6) 주민예산학교 운영 및 위탁을 정함(안 제19조)
- 7) 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을 정함(안 제21조)
 - 가)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있는 자
 - 나) 심사기준 및 지급방식은 따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주민 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실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 나. 또한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요사업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공청회 등으로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지방 행정 환경에 대응하며 주민중심의 자치구현을 위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 1.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비용추계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방법의 구체적 운영방안 등

제6조(주민의견수렴 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2.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운영
3.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제7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의 사항
2.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별, 성별(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간 및 선정 인원 등을 미리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추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보건사업소분과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사업소 소관업무

2. 행정복지분과위원회: 행정복지국 소관업무
3. 경제산업분과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업무
4. 농업분과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소관부서의 직제순 상위 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및 개선방안,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각 분과위원장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①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역회의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창읍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거창읍 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1. 주민예산학교 수료자

2. 예산 및 재정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거창읍 지역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회의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거창읍 지역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주민예산학교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예산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지급방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공간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등

제3조(유효기간)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위원회 수당 :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나. 예산학교 운영 : 제19조(주민예산학교 운영 및 위탁)
- 다. 공로자 포상 :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근거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나. 내용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가. 위원회 수당, 포상금 등 연간 5천만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나. 위원회 수당 : 2021년도 예산 1,400천원 확보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4. 6.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3. 26.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3. 3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곽승욱]

가. 제안이유

- 점점 다양해지는 보건수요 대처와 전문화·세분화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정비로 보건소에 과를 신설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시책 및 군 현안 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보건소 분과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안 제10조)
- 2) 정원의 총수 증원 11명 : 767명 ⇒ 778명(안 제25조)
집행기관의 정원 : 증11명(753명 ⇒ 764명)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가) 일반직 4급 정원 : 증1명(3명⇒4명)

나) 일반직 4~5급 정원 : 감1명(2명⇒1명)

다) 일반직 5급 정원 : 증1명(37명⇒38명)

라)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9명

(1) 현행 : 690명(본청323, 의회11, 직속기관118, 사업소37, 읍41, 면160)

(2) 변경 : 699명(본청326, 의회11, 직속기관121, 사업소37, 읍43, 면161)

마) 연구직(연구사) 정원 : 증1명

(1) 현행 : 5명(본청2, 직속기관2, 사업소1)

(2) 변경 : 6명(본청3, 직속기관2, 사업소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중호]

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주민중심 보건서비스 제공 및 주민생활과 밀착된 원스톱 보건복지에 대한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보건소 조직개편안이 승인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고

나. 소지역단위 읍면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민생활현장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인력을 개편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1.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서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67명”을 “77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53명”을 “764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0조(설치)ㄴ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p> <p>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p> <p>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67명</u>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 정원: <u>753명</u>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p> | <p>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p> <p>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p> <p>③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p> <p>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78명</u>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 정원: <u>764명</u>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p> |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 기관별 직급별 |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 | 사업소 | 읍 | 면 |
|----------------------|----------|------------|------------|----|------------|------------|----------|-----|----------|------------|
| | | | | | 소계 | 농업 기술센터 | 보건소 | | | |
| 총 계 | | 778 767 | 350 346 | 14 | 157 153 | 72 69 | 85 84 | 41 | 44 42 | 172 171 |
| 정무직 | | 1 | 1 | | | | | | | |
| 일반직 | 소계 | 742 732 | 344 341 | 14 | 128 124 | 43 40 | 85 84 | 40 | 44 42 | 172 171 |
| | 4급 | 4 3 | 3 | | 1 0 | | 1 0 | | | |
| | 4~5 급 | 1 2 | | | 0 1 | | 0 1 | | 1 | |
| | 5급 | 38 37 | 15 | 3 | 6 5 | 4 | 2 1 | 3 | | 11 |
| | 6급 이하 | 699 690 | 326 323 | 11 | 121 118 | 39 36 | 82 | 37 | 43 41 | 161 160 |
|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 | 1 | 1 | | | | | | | |
| 연구직 (연구사) | | 6 5 | 3 2 | | 2 | 2 | | 1 | | |
| 지도직 (지도사) | | 28 | 1 | | 27 | 27 | | | |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증원 11명

나. 관련조문 : 제2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 1차년도 (2021년) | 2차년도 (2022년) | 3차년도 (2023년) | 4차년도 (2024년) | 5차년도 (2025년) | 합계 |
|-----|-----------------|-----------------|-----------------|-----------------|-----------------|-------|
| 군 비 | 513 | 513 | 513 | 513 | 513 | 2,565 |

3. 관련 의견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시책 및 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으로 현안업무 추진과 행정업무 효율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1년 인건비 : 513,000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곽 승 욱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4. 6.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3. 26.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3. 3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가. 제안이유

- 청년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신설하고 청년단체 등의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함(안 제명, 제6조·제9조)
- 2) 청년네트워크 신설(안 제13조의2)
 - 가) 기능 :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문제의 발굴·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등
 - 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3) 청년시설 위탁 근거 신설, 재정지원 재량범위 확대(안 제19조)
- 4) 청년단체 등의 재정지원 재량범위 확대(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가. 청년의 군정참여기회 방법의 다양화와 청년단체의 재정지원 확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창군에 거주·생활하는 청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으로
- 나. 제명 및 위원회 명칭변경과 청년네트워크 신설, 청년 시설 및 단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 1.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비용추계서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청년발전위원회”를 “청년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 청년 및 청년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로 한다.

제8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기초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발전위원회”를 “청년정책위원회”로 각각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청년네트워크)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거창군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를 둔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하거나 청년시설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중 “경비의 일부를 보조”를 “경비를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발전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청년발전위원회 및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u></p>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생략) 4. 거창군 <u>청년발전위원회</u>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6. (생략)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u>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u> 해야 한다.</p> <p>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p> <p>②~③ (생략)</p> <p>제9조(청년발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거창군 <u>청년발전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u>거창군 청년기본 조례</u></p>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거창군 <u>청년정책위원회</u>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6.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u>성별·연령별·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u> 듣고 <u>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u> 해야 한다.</p> <p>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u>다만,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거창군 <u>청년정책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2(청년네트워크) ① 군수는 <u>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거창군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u>를 둔다. ② <u>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u></p> |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3. (생략)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하거나 청년시설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청년네트워크 활동 경비 지원,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나. 관련 조문 : 제13조의2(청년네트워크),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 1차 연도 (2021년) | 2차 연도 (2022년) | 3차 연도 (2023년) | 4차 연도 (2024년) | 5차 연도 (2025년) | 합계 |
|----|------------------|------------------|------------------|------------------|------------------|-----|
| 군비 | 165 | 55 | 55 | 55 | 55 | 385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1년도)

가. 청년네트워크 활동비 : 5백만원

나. 청년 역량강화 지원 : 160백만원

1) 청년 언택트 마케팅 지원 : 100백만원

2) 청년 동아리 지원 : 10백만원

3) 경남·울산지구 JC회원대회 지원 : 50백만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임 양 희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4. 6.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3. 26.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3. 3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가.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정함(안 제2조)
- 2)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
- 3) 주소정보안내판 등에 광고 게재 시 비용부담 기준을 정함 (안 제4조)
- 4) 주소정보 생활화 사업을 정함(안 제5조)

- 5)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11조)
 - 가) 위원회 명칭 변경 : 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 6)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 공제가입을 정함(안 제12조)
- 7)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을 정함(안 제13조)
- 8) 업무의 위탁근거를 정함(안 제14조)
- 9) 토지 등의 출입증을 정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가. 2007. 4. 5 시행된 도로명주소체계는 보다 안정화·고도화되어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다 세밀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 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이름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 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 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사업)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 정보 사용
- 3. 군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거창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지원 또는 행정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2.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
3.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주소정보의 제공
6.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
8.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
9.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주소정보산업 진흥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체조사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건물·시설물 등에 출입할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앞 쪽)

제 호

토지·건물·시설물 등 출입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
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거 창 군

60mm×90mm [백상지 150g/m²]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시설물 등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호서식]

토지·건물·시설물 등 출입증 발급 대장

| 발급 번호 | 소속/ 직급(직위) | 성 명 (생년월일) | 유효기간 | 발급일 | 발급사유 | 사 진 | 수령인/ 수령일 | 반납인/ 반납일 | 폐기인/ 폐기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4. 6.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3. 26.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3. 3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규섭]

가. 제안이유

-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과 경감률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체납 군세에 대한 가산금 면제를 신설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별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경감 확대(안 제9조의2·별표)
 - 가) 경감기한 연장 : 2020. 12. 31. ⇒ 2021. 12. 31.
 - 나) 경감률 확대 : 9단계(10%~50%) ⇒ 14단계(10%~75%)

- 2) 소상공인의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9조의3)
- 가)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나) 면제세목 : 2020년 이후 부과한 군세에 대한 가산금·증가산금
 - 다) 면제제외 : 3회 이상 군세 체납자
- 3) 일몰 도래에 따른 감면 조문 정비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기간 만료에 따른 감면 삭제(안 제3조)
 - 나) 일몰도래 감면 연장(안 제5조·제7조·제9조)
 - (1) 대상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
 - (2) 연장 : 2021. 12. 31. ⇒ 2023. 12. 3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 및 지원하고자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재산세 경감 기한 연장 및 경감률을 확대하고
- 나. 소상공인의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 일몰도래에 따른 감면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을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으로 하고, “감면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감면률”을 “경감률”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가산금 등에 대한 면제)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군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증가산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군세를 3회(「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경감하였거나 부과 또는 경감하여야 할 재산세는 제9조의2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산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u> <u>법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u> <u>분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u> <u>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u></p> <p><u>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u>2021년 12월 31일</u>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생 략)</p> <p><u>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u>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 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 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 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 <p><u><삭 제></u></p> <p><u>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u>2023년 12월 31일</u>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현행과 같음)</p> <p><u>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u>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 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 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 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u></p> <p>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p> <p>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 <p>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u></p> <p>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u>(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u>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u>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경감률을 곱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 이 경우 <u>경감률</u>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p> <p><u><삭 제></u></p> <p><u><삭 제></u></p> <p>제9조의3(가산금 등에 대한 면제)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u>군세</u></p> |

| 현행 | 개정안 |
|----|---|
| | <p>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u>군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u></p> <p>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u></p> <p>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u>가산금</u></p> <p>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u>증가산금</u></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u>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 한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u></p> |

[별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경률(제9조의2 관련)

| 임대료 인하율 | 경감률 |
|------------------------------|-----------------|
|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 100분의 10 |
|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 100분의 15 |
|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 100분의 20 |
|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 100분의 25 |
|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 100분의 30 |
|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 100분의 35 |
|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 100분의 40 |
|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 100분의 45 |
| <u>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이하</u> | <u>100분의 50</u> |
| <u>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5이하</u> | <u>100분의 55</u> |
| <u>100분의 55초과 100분의 60이하</u> | <u>100분의 60</u> |
| <u>100분의 60초과 100분의 65이하</u> | <u>100분의 65</u> |
| <u>100분의 65초과 100분의 70이하</u> | <u>100분의 70</u> |
| <u>100분의 70초과</u> | <u>100분의 75</u> |

비고

1.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text{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개월 수} \div 3$$

2.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text{보증금} \times \text{이자율} \div 12\text{개월}$$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4. 6.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3. 26.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3. 3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규섭]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2020. 12. 29. 시행)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주민세 과세 용어를 변경함
 - 가) 균등분 ⇒ 개인분(안 제6조)
 - 나) 재산분 ⇒ 사업소분(안 제7조)

2) 주민세 세율을 정함

가) 개인분의 세율을 1만원으로 정함(안 제6조)

나)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함(안 제7조)

3)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사항을 정함(안 제8조)

가) 신고대상 :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건축물 신축·증축 등

나)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

4) 법령 중복·재기재 등 삭제(안 제2조~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가. 「지방세법」 개정(시행 2021. 1. 1.)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서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하고, 제2조·제3조·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앞의 “제2장 담배소비세”를 삭제하고 제5조 조 제목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담배소비세에 대한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으로 한다.

제6조 앞의 “제3장 주민세” 및 “제1절 균등분”을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개인분의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7조 앞의 “제2절 재산분”을 삭제하고,

제7조 조 제목 중 “세율”을 “사업소분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같은 항 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9조 앞의 “제3절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제9조 조 제목 “(세율)”을 “(종업원분의 세율)”로 하고,
제10조 조 제목 “(신고의무)”를 “(종업원분의 신고의무)”로 한다.

제11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를 삭제하고,
제11조 조 제목 “(세율)”을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제14조 앞의 “제5장 재산세”를 삭제하고
제14조 조 제목 “(납기)”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로 한다.

제15조 앞의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삭제하고
제15조 조 제목 “(세율)”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균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장 총칙 | <삭 제>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 제> ▷ 규정과 상관없이 상위법령은 조례에 적용 되므로 삭제 |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거창군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삭 제> ▷ 「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거창군세 기본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하여 삭제 |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제2장 담배소비세 | <삭 제> |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생략) | 제5조(담배소비세에 대한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생략) |
|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 <삭 제> <삭 제> |
|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 | 제6조(개인분의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

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생략)

제10조(신고의무)
①~② (생략)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삭제>

제7조(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같은 항 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삭제>

제9조(종업원분의 세율) (현행과 같음)

제10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11조(지방소득세의 세율)

| | |
|--|--|
| <p>①~③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재산세</u></p> <p>제14조(<u>납기</u>)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u></p> <p>제15조(<u>세율</u>) (생 략)</p> | <p>①~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4조(<u>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u>)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5조(<u>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u>) (현행과 같음)</p> |
|--|--|

거창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4. 6.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3. 26.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3. 3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가. 제안이유

-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지원사업 변경(안 제7조)
 - 가) (현행) 종량제봉투 수수료 면제
 - 나) (변경) 종량제봉투 지원

2)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증액(안 제10조)

가) 보훈명예수당 : 월 3만원 ⇒ 월 7만원

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 50만원

3) 법령 재기재·위배소지 등 정비(안 제10조·제15조·제17조)

가) 군수의 예산편성권 침해소지 정비 : 지급한다 ⇒ 지급할 수 있다

나) 법령 위임없는 권리제한 및 법령 재기재 규정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가.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는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나. 이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을 변경하고,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1. 거창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서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월 3만원”을 “월 7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서식 중 생년월일란에 “(남/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① (생략) ②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u>일반 종량제봉투의 수수료를 면제한다.</u></p> <p>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u>지급한다.</u>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나. 보훈명예수당: 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p> <p>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나. 보훈명예수당: <u>월 3만원</u></p> <p>2. 사망위로금: <u>30만원</u></p> <p>제15조(명예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p> <p>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명예수당을 지</p> | <p>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대상자에게 <u>예산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u>지급할 수 있다.</u>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나. 보훈명예수당: 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p> <p>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나. 보훈명예수당: <u>월 7만원</u></p> <p>2. 사망위로금: <u>50만원</u></p> <p>제15조(명예수당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p> <p>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명예수당을 지</p> |

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삭 제>▷ 체납처분은 압류절차를 의미하므로 주민에게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을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근거 있어야 함

<삭 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4항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 하면됨. 조례위임사항 아님.

<삭 제> ▷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법제처 정비대상)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증액과
종량제봉투 예산 지원

나. 관련 조 문: 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 1차년도 (2021년) | 2차년도 (2022년) | 3차년도 (2023년) | 4차년도 (2024년) | 5차년도 (2025년) | 합계 |
|----|-----------------|-----------------|-----------------|-----------------|-----------------|-------|
| 군비 | 714 | 714 | 714 | 714 | 714 | 3,570 |

3. 관련 의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증액지급과 종량제
봉투 예산지원을 통한 예우 강화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 672,000천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5,000천원
3. 종량제봉투 지원 : 17,000천원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강 준 석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4. 6.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3. 26.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3. 3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1. 6. 9. 시행)으로 임의기구였던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임조례 입안원칙에 따라 법령 재기재 등 정비(안 제1조·제2조)
 - 가) 목적 :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으로 함
 - 나) 정의 : 위임조레이므로 상위법령 정의규정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삭제

2)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등 신설함(안 제9조~제15조)

가) 구성

(1) 위원장 군수 포함 15명 이하로 구성

(2) 당연직 위원 : 군 소속 국장 1명, 군 체육회장

(3) 위촉직 위원 :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체육관련 업무과장, 체육 또는 관련 단체의 장,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운영, 간사, 운영세칙을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가.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반드시 설치하는 강행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1. 6. 9.)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군수와 체육회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는 등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경기단체”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기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생활체육 동호인”을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체육동호회”를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9조(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국장 1명, 군 체육회장이 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체육관련 업무 과장
 2. 체육 또는 관련 단체의 장
 3.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전을 제출하여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해당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지원분야란 중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조직의 대회 개최 및 참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우리군의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u> <u>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u> <u>3. “생활체육”이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u> <u>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이의 산하단체로 군내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u> <u>5.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나 이의 산하단체로 군내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u> <u>6.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소속 종목 단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u> <p><u>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우수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u></p> |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u><삭 제></u></p> <p><u>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우수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거</u></p> |

기단체를 육성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략)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생략)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 2.~3. (생략)

제5조(직장체육의 진흥) ①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 2.~9. (생략)
- ③ (생략)

<신 설>

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활동
- 2.~3. (현행과 같음)

제5조(직장체육의 진흥) ①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조직의 대회 개최 및 참가
- 2.~9.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체육진흥협회의 구성)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

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국장 1명, 군 체육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체육관련 업무 과장,
2. 체육 또는 관련 단체의 장
3.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
| <p><신 설></p> | <p>제13조(운영) ① <u>협회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u> ② <u>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출하여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u> ③ <u>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④ <u>협회는 해당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
| <p><신 설></p> | <p>제14조(간사) <u>협회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u></p> |
| <p><신 설></p> | <p>제15조(운영세칙) <u>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